

#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

## 1. 신입생 선발계획 【총괄】

(단위: 명)

모집 구분	전형 유형	전형명	모집인원			비고
			정원 내	정원 외	계	
수시	학생부 종합	교직적성인재	60	-	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단계: 3배수 선발</li> <li>• 1단계: 2배수 선발</li> </ul>
		지역인재선발	140	-	140	
		국가보훈대상자	5	-	5	
		농어촌학생	-	14	14	
		기회균형선발	-	5	5	
		장애인 등 대상자	-	10	10	
		<b>계</b>	<b>205</b>	<b>29</b>	<b>234</b>	
정시 (나)	수능 위주	일반학생	150	-	150 <sup>1)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단계: 2배수 선발</li> <li>• 성비 적용</li> <li>• 1단계: 2배수 선발</li> </ul>
		농어촌학생	-	-	-	
		기회균형선발	-	-	-	
		장애인 등 대상자	-	-	-	
		<b>계</b>	<b>150</b>	<b>-</b>	<b>150</b>	
<b>합계</b>			<b>355</b>	<b>29</b>	<b>384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학정원: 355</li> <li>• 정원 외 : 29</li> </ul>

1) 2023학년도 정시모집 등록포기로 인한 미충원 인원(1명) 포함: 「신입생 미충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 제3조제1항」 적용

※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의 미달 및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정원 내 일반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

※ 수시모집 정원 외 전형의 미달 및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정원 외 해당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

※ 대학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동 가능

## 2. 수시모집 【학생부종합전형】

### 가. 지원자격

전형 유형	전형명	지원자격
학생부 종합	교직적성 인재	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	지역인재 선발	○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3개년(입학 시부터 졸업 시 까지)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한 자
	국가보훈 대상자	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- 『국가보훈 기본법』 제3조제2호에 따른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- 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「 <b>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</b> 」 발급대상자
	농어촌 학생	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 아래 해당지역 소재 중·고등학교에서 6개년(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)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·고등학교 재학기간(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) 동안 본인과 부·모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- 『지방자치법』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- 『도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』 제2조에 따른 도시·벽지 지역 ※ 부모의 사망·이혼·기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※ 상기 해당지역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
	기회균형 선발	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제1호(수급권자) 및 제2호(수급자)에 의한 대상자 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 -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
	장애인 등 대상자	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자 -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조에 따른 상이등급 자 -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상이등급 자

나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전형 유형	전형명	전형 절차	반영 비율[100%]				비고
			서류평가		면접		
			최고	최저	최고	최저	
학생부 종합	○ 교직적성인재 ○ 지역인재선발 ○ 국가보훈대상자	1단계	100%		-		교직적성인재 1단계 3배수 선발 그 밖의 모든 전형 1단계 2배수 선발
			1,000	588			
	○ 농어촌학생 ○ 기회균형선발 ○ 장애인등 대상자	2단계	50%		50%		
			500	400	500	400	

다. 수능 최저학력 기준: **없음**

### 3. 정시모집 【일반전형(수능위주)】

#### 가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

-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**5개 영역【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탐구】**을 모두 응시해야 함.
- 국어, 수학 영역은 **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한 개 과목을 응시**해야 함.
- 탐구 영역은 **사회 / 과학 영역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두 개 과목을 응시**해야 함.

#### 나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모집 구분	전형명	전형 절차	총점	반영 비율[100%]				비고
				수능성적		면접		
				최고점	최저점	최고점	최저점	
정시 (나)	일반 학생	1단계	500	100%		-		• 1단계: 2배수 선발
				500	0			
		2단계	600	90.1%		9.9%		
				500	0	100	45	

#### 다. 반영방법

##### 1)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

모집 구분	수능성적 활용지표	반영 비율[100%]				비고
		국어	수학	영어	탐구	
정시 (나)	표준점수 및 등급 환산점수	25%	25%	25%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 / 과학 탐구영역만 반영함</li> <li>※ <b>직업 탐구영역은 반영하지 않음</b></li> <li>• 제2외국어 /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</li> <li>• 국어, 수학, 탐구영역은 표준점수 적용</li> <li>• 영어영역은 등급별 환산점수 적용</li> </ul>

2)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

등급	1	2	3	4	5	6	7	8	9
환산점수	200	190	180	170	160	140	120	100	80

3)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수

등급	1	2	3	4	5	6	7	8	9
가산점수	2		1.75		1.5		1		0

라. 수능 최저학력 기준: **없음**

가. 지원자격

1) 공통자격

-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5개 영역【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탐구】을 모두 응시해야 함.
- 국어, 수학 영역은 **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한 개 과목을 응시**해야 함.
- 탐구 영역은 **사회 / 과학 영역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두 개 과목을 응시**해야 함.

2) 세부자격

모집 구분	전형명	지원자격
정시 (나)	농어촌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 아래 해당지역 소재 중·고등학교에서 6개년 (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)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·고등학교 재학기간(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)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</li> <li>- 『지방자치법』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</li> <li>- 『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』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</li> <li>※ 부모의 사망·이혼·기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</li> <li>※ 상기 해당지역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</li> </ul>
	기회균형 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제1호(수급권자) 및 제2호(수급자)에 의한 대상자</li> <li>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</li> <li>-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</li> </ul>
	장애인 등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</li> <li>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자</li> <li>-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조에 따른 상이등급 자</li> <li>-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상이등급 자</li> </ul>

## 나.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

모집 구분	전형명	전형 절차	총점	반영 비율[100%]				비고
				수능성적		면접		
				최고점	최저점	최고점	최저점	
정시 (나)	○ 농어촌학생 ○ 기회균형선발	1단계	500	100%		-		1단계: 2배수 선발
				500	0			
	○ 장애인등 대상자	2단계	600	90.1%		9.9%		
				500	0	100	45	

## 다. 반영방법

### 1)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

모집 구분	수능성적 활용지표	반영 비율[100%]				비고
		국어	수학	영어	탐구	
정시 (나)	표준점수 및 등급 환산점수	25%	25%	25%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 / 과학 탐구영역만 반영함</li> <li>※ 직업 탐구영역은 반영하지 않음</li> <li>• 제2외국어 /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</li> <li>• 국어, 수학, 탐구영역은 표준점수 적용</li> <li>• 영어영역은 등급별 환산점수 적용</li> </ul>

### 2)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

등급	1	2	3	4	5	6	7	8	9
환산점수	200	190	180	170	160	140	120	100	80

### 3)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수

등급	1	2	3	4	5	6	7	8	9
가산점수	2		1.75		1.5		1		0

## 라. 수능 최저학력 기준: **없음**